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설비 설치 방해 및 훼손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745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설비 설치 방해 및 훼손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	2
2. 부칙	10
IV . 입법의 재정영향	12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서삼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Ⅲ. 검토의견

1. 설비 설치 방해 및 훼손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과태료 전환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3항 등).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벌칙) ①·② (생략)	제2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③ <u>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u> ----- ----- -----.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31조(과태료) ①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 ----- -----.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9조제3항제2호는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해당 설비 손상 또는 표지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설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준비 및 관리 단계에서의 비협조로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가 간접적이고 예비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임.

이에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이러한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④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5조(토지 등에의 출입)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방해 금지) ② 누구든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동물 또는 선박 등을 매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2025년 정부는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²⁾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개선과제를 추진한 바 있음.

- 개정안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와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경미한 위반행위로 인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 제29조³⁾ 및 제31조⁴⁾의 적용을 받는 다른 행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먼저, 현행법 제29조제1항은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2) 통지·표시·조사·검사 등 「법령입안심사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18가지([참고 1] 참조)

3)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①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파손하여 그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방해전파를 송신하여 서비스 제공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해상교통안전이라는 법의 핵심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는 실체적이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함.

반면, 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제29조제3항제2호(설치·보수·조사·측량 방해) 및 제4항(설비 손상·표지물 훼손)의 위반행위는 시스템의 기능 장애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물리적 훼손이거나 행정청의 설비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비협조로서, 이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원활한 행정 수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시설의 효용을 해치는 단순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한편, 현행법 제31조제1항에서 제25조제2항의 행위 중 하나인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 형벌이 아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성격인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 체계상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조치로 보임.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최근 5년간 법 제22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 위반 건수가 0건이라는 점과 설비 구역이 제한구역으로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

게 제한되어 법 위반 소지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벌금형이 과태료로 전환되더라도 제재의 억지력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행정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벌칙의 존재로 인해 범위반이 제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과태료 전환 후 제재 완화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점검은 필요함.

□ 개정안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헌법재판소(2018.8.30., 2017헌바368)는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단지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단순한 의무태만 내지 의무위반)로 보아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과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공익을 침해한 행위로 보아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가, 그리고 행정형벌을 과할 경우 그 법정형의 종류와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당해 위반행위가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그르친 것이 아닌 한 그 처벌내용은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이다”라고 판시하였으며,

이 결정의 반대의견은 “행정질서벌만으로는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형벌을 도입한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2024)」에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은 ‘가능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상한액의 적정성은 종전 벌금형의 상한액과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한 종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는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현행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 위반행위인 ‘토지 출입 등 방해’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인 3천만원과의 균형 및 형사처벌 폐지에 따른 제재의 위법행위 억제력 등을 감안한 측면이 있어 보임.

설비를 손상·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해서 종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할 때 동일한 금액으로 전환하여 형사처벌 완화 및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해양수산부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방해한 자 및 설비를 손상하거나 표지물을 훼손한 자에 대한 형벌규정은 행정제재를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3. 부 칙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며,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임(안 부칙).

[표] 개정안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제도의 계도 및 안내 준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또한,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적용할 때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5)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6)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7)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5)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7)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IV. 입법의 재정영향

-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 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⁸⁾

문 의 처
02)6788-5427

8)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법령집안심사기준」 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 ① (인허가 등) 특정 영업이나 행위에 필요한 행정청의 인허가, 승인, 지정, 등록 등에 관한 의무 위반행위
- ② (신고) 특정 영업이나 행위를 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행정청에 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영업 개시신고, 변경신고, 승계신고, 휴·폐업신고, 행위신고)
- ③ (보고) 법령의 적용을 받는 개인, 법인이나 행정기관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은 단체 등이 특정한 사항의 보고의무나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행위(특정 사실의 발생을 행정청에 통지, 통보, 신고할 의무 불이행, 법령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허가증·요금표 등 표지물의 게시 위반 등)
- ④ (행정상 명령) 행정청이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일정한 법률상의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受忍) 의무 등을 불이행하는 행위(이행명령, 개선명령, 시정명령, 조치명령, 보완명령)
- ⑤ (조사)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직원이 그 감독을 받는 사업장, 공장, 창고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를 조사하는 등을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조사의 방해·기피·회피, 자료제출·설명·보고 명령(요구) 불응, 출석이나 진술·답변 요구 불응)
- ⑥ (계획) 업무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계획, 대책, 규정, 기준 등을 수립·작성하고 이를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수립한 계획 등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 ⑦ (유사명칭) 법률상 특정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님에도 해당 자격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구성된 특정 기관의 명칭을 그 기관 외의 자가 사용하는 행위
- ⑧ (교육) 법률상 일정한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불이행하거나 관리자 등이 교육대상자에 대해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교육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보수교육, 연수교육, 안전교육, 위생교육)

- ⑨ (강제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보험사고 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 ⑩ (게시) 법령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나 요금 등의 정보를 영업소, 사업장 등에 게시하지 않는 행위
- ⑪ (보존) 법령에 따라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와 장부를 비치하거나 열람에 제공하지 않는 행위
- ⑫ (통지) 특정 사실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통보,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공지·공시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⑬ (인력배치) 업무상 특정 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해당 인력을 선임, 지정, 배치하지 않는 행위
- ⑭ (인증)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사전에 검정이나 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로서 그 대상의 특성에 따라 형식승인, 검정, 형식검정, 형식등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표현됨
- ⑮ (검사) 안전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받아야 하는 검사나 점검을 받지 않는 행위
- ⑯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 수단에 법령에서 정한 특정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⑰ (토지출입) 행정청이나 사업시행자 등 권한 있는 자가 공사, 조사, 측량 등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나 공무원 등이 토지 출입 시에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⑱ (기타) 준수사항 위반, 겸직금지 등